

법원 간 교신의 세부원칙

범위와 정의

1. 이 세부원칙들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개시된 도산 내지 채무조정과 관련된 국제적 절차(“병행절차”)에서 법원들 간의 직접 교신(서면 또는 구두)에 적용된다. 이 문서의 어느 부분도 당사자들을 통하거나 녹취서의 교환에 의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법원 간의 교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문서는 준거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2. 이 세부원칙들은 병행절차에서 법원 간 교신의 방법에만 적용된다. 교신의 원칙(예를 들어, 법원 간 교신이 당해 절차에 관한 법원의 관할권이나 그 행사에 간섭하거나 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2016년 10월에 도산사법네트워크에 의하여 공표되고 별첨A로 첨부된 「국제 도산 사건에서 법원 간 교신 및 공조에 관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¹⁾이 참조될 수 있다.
3. 이 세부원칙들은 “개시법관” (뒤에서 정의 내려짐)에 의하여 연락이 개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 법관으로부터 재판권을 받는 당사자들이 그 법관에게 그와 같은 연락을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혹은 개시법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와 같은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다.
4. 이 문서에서:
 - a. “개시법관”은 처음에 교신을 개시한 법관을 말한다.
 - b. “수신법관”은 처음에 교신을 수신한 법관을 말한다.
 - c. “조력자”는 개시법관이 근무하는 법원 또는 수신법관이 근무하는 법원으로부터 병행절차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 개시법관이나 수신법관을 위하여 교신을 개시하거나 수신하기 위하여 지정된 사람(들)을 말한다.

조력자의 지정

5. 각 법원은 1인 또는 다수의 법관 또는 행정 공무원을 조력자로 지정할 수 있다. 조력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에는 교신 과정의 초기 단계를 감독할 법관이 지정되는 것이 권고된다.
6. 법원들은 조력자의 신분 및 상세 연락처를 그들의 웹사이트와 같은 곳에 잘 알려지도록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504호의 [별지 1] 가이드라인(Guidelines)과 같음

록 공표하여야 한다.

7. 법원들은 최초의 교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들) 및 법원 간 교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한 기술(예를 들어, 전화 또는 화상 회의 가능 여부, 보안 채널 이메일 가능 여부 등)을 잘 알려지도록 열거하여야 한다.

교신의 개시

8. 처음에 교신을 개시하기 위하여 개시법관은 그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병행절차가 진행되는 다른 법원의 조력자의 신분과 상세 연락처를 입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개시법관이 그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9. 수신법관과의 첫 번째 연락은 개시법관의 조력자로부터 수신법관의 조력자에게 이메일을 비롯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개시법관이 있는 법원의 조력자의 이름과 상세 연락처
 - b. 개시법관의 이름과 직위 및 수신법관이 개시법관과 직접 연락하기를 원할 때에 개시법관이 그러한 연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시법관의 상세 연락처
 - c. 개시법관에게 신청되어 있는 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그리고 병행절차에서 수신법관에게 신청되어 있는 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알고 있는 경우, 알고 있지 않다면, 달리 식별할 수 있는 것)
 - d. 사건의 특성 (비밀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 e. 교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개시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만일 그 사건에 관하여 법원 간 교신을 위한 법원의 명령, 지시 또는 프로토콜로서 개시법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있다면 그러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 f. 가능한 경우에는, 요청된 교신을 위하여 제안된 일자와 시간 (시차를 감안하여)
 - g. 개시법관에 의하여 교신이 구하여지는 구체적인 쟁점(들)

교신을 위한 준비

10. 개시법관이 속한 법원의 조력자와 수신법관이 속한 법원의 조력자는 그 법원들 중 하나가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을 참여시킬 필요 없이 교신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서로 충분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11. 교신의 시간, 방법 및 언어는 병행절차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개시법관과 수신법관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2. 번역이나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들에 의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으로 된 교신이 통역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원래 형태의 교신도 제공되어야 한다.
13. 비밀인 정보가 교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교신을 위하여 안전한 수단이 이용되어야 한다.

개시법관과 수신법관 사이의 교신

14. 교신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후, 개시법관에 의하여 교신이 구하여지는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및 그와 관련된 그 이후의 교신은 가능한 한 개시법관과 수신법관 사이에서 병행절차에 있어 교신 및 공조를 위한 프로토콜이나 명령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²⁾
15. 만일 수신법관이 조력자의 사용을 피하기를 원하고 개시법관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나타내었다면, 그 법관들은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을 참여시킬 필요 없이 교신을 위한 준비에 관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16. 이 문서의 어느 부분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개시법관이 수신법관에게 직접 연락할 재량을 제한하지는 아니한다.

2) 「국제 도산 사건에서 법원 간 교신 및 공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중 가이드라인 2를 참조.